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305
----------	------

2020. 04. 2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20. 2. 5. 이준형 의원 발의 (2020. 2. 12 회부)

## 2. 제안이유

- 도시재생기금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민간단체 기부금품 등을 조성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단체 기부금품'을 '출연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가. 조례 제5조제5호 “출연금”을 “기부금품”으로 변경

- 출 연 금 :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4. 검토의견

- 개정안은 도시재생기금의 조성 재원 중 하나인 “출연금”의 용어를 “기부금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출연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기부금품

- “출연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여건상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이며, “기부금품”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을 말하는 것임.
- 개정안은 용어상의 의미가 맞지 않는 “출연금”을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품”으로 정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됨.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등이 민간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라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sup>1)</sup>.

1)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기부금품법 제2조(용어)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임경숙
연 락 처	02-2180-8205
이 메 일	kslinga@seoul.go.kr